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(2019. 12. 3.)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의회운영위원회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

의안	19-161
번호	19-162

2019. 12. 3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의회사무국)

나. 제 출 일 : 2019. 11. 15.

다. 회 부 일 : 2019. 11. 18.

2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다.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

3.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

가. 세 입

○ 해당 없음.

나. 세 출

○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9억2,333만3천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38억508만2천원 대비 3.11% 증가된 규모임.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			금액	증감률
총 계	3,923,333	3,805,082	118,251	3.11%
정책사업	1,681,017	1,512,304	168,713	11.16%
행정운영경비	2,242,316	2,292,778	△50,462	△2.20%

다.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

(단위:천원)

부문 · 정책사업 · 단위사업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			금액	증감률
총 계	3,923,333	3,805,082	118,251	3.11%
일반공공행정	1,681,017	1,512,304	168,713	11.16%
입법및선거관리	1,681,017	1,512,304	168,713	11.16%
선진의회상 정립	1,681,017	1,512,304	168,713	11.16%
의정활동 지원	1,576,977	1,451,092	125,885	8.68%
의정활동 홍보	104,040	61,212	42,828	69.97%
기타	2,242,316	2,292,778	△50,462	△2.20%
기타	2,242,316	2,292,778	△50,462	△2.20%
행정운영경비	2,242,316	2,292,778	△50,462	△2.20%
인력운영비	2,087,716	2,081,185	6,531	0.31%
기본경비	154,600	211,593	△56,993	△26.94%

- 구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의회 전체 예산의 42.84%인 16억8,10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1.16%, 1억6,87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, 행정운영경비는 22억4,23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.20%인 5,04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, 재무활동은 없음.

다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			금액	증감률
총 계	3,923,333	3,805,082	118,251	3.11%
인건비	1,950,136	1,925,716	24,420	1.27%
인건비	1,950,136	1,925,716	24,420	1.27%
보수	1,859,474	1,858,822	652	0.04%
기타직보수	71,607	66,894	4,713	7.05%
기간제근로자등보수	19,055	0	19,055	순증
물건비	1,710,549	1,728,287	△17,738	△1.03%
일반운영비	229,501	289,949	△60,448	△20.85%
사무관리비	176,599	235,247	△58,648	△24.93%
공공운영비	52,902	54,702	△1,800	△3.29%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			금액	증감률
여비	81,280	135,280	△54,000	△39.92%
국내여비	57,280	111,280	△54,000	△48.53%
국제화여비	24,000	24,000	0	0.00%
업무추진비	65,095	65,095	0	0.00%
기관운영업무추진비	3,881	3,881	0	0.00%
정원가산업무추진비	2,320	2,320	0	0.00%
시책추진업무추진비	50,494	50,494	0	0.00%
부서운영업무추진비	8,400	8,400	0	0.00%
직무수행경비	83,340	80,190	3,150	3.93%
직책급업무수행경비	7,800	7,800	0	0.00%
직급보조비	61,140	57,990	3,150	5.43%
특정업무경비	14,400	14,400	0	0.00%
의회비	1,251,333	1,157,773	93,560	8.08%
의정활동비	237,600	237,600	0	0.00%
월정수당	545,398	535,756	9,642	1.80%
의원국내여비	11,210	13,640	△2,430	△17.82%
의원국외여비	61,425	61,425	0	0.00%
의정운영공통경비	109,188	109,188	0	0.00%
의회운영업무추진비	120,893	120,893	0	0.00%
의원역량개발비(공공위탁, 자체 교육)	4,700	7,400	△2,700	△36.49%
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	27,000	27,000	0	0.00%
의원정책개발비	90,000	0	90,000	순증
의장협의체부담금	7,000	7,000	0	0.00%
의원국민연금부담금	17,181	19,288	△2,107	△10.92%
의원국민건강부담금	19,738	18,583	1,155	6.22%
경상이전	135,095	137,079	△1,984	△1.45%
포상금	95,495	97,479	△1,984	△2.04%
성과상여금	95,495	97,479	△1,984	△2.04%
연금부담금등	39,600	39,600	0	0.00%
의원상해부담금	39,600	39,600	0	0.00%
자본지출	127,553	14,000	113,553	811.09%
자산취득비	127,553	14,000	113,553	811.09%
자산및물품취득비	123,553	10,000	113,553	1135.53%
도서구입비	4,000	4,000	0	0.00%

-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 -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(속기 사무보조 인건비) : 19,055천원(순증)
 - 의원정책개발비(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) : 90,000천원(순증)
 - 자산 및 물품취득비(본회의장 환경개선, 의정활동 홍보 물품구매)
: 123,553천원(1,135.53%)
-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 - 사무관리비(의회 홈페이지 개편 완료에 따라) : 176,599천원(△24.93%)
 - 국내여비(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) : 50,400천원(△48.53%)
 - 의원국내여비(의정국내여비) : 11,210천원(△17.82%)

4. 검토결과

가. 예산규모

-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세출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의 0.57%인 39억2,333만3천원으로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 16억8,101만7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4,231만6천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, 전년도 예산 38억508만2천원 대비 3.11% 1억1,825만1천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

- “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” 사업은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, 의회비, 연금부담금등,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.
예산액은 15억1,45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2,546만5천원, 9.03% 증액

되었음. 이는 본회의장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7,500만원, 의원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9,000만원이 증가로 인한 것임.

- “국외 선진의회 연수” 사업은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)와 의회비(의원국 외여비)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6,240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3만원 증액되었으며, 이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증가되었기 때문임.

- “의정활동 홍보” 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의정활동시 필요한 기획보도 및 마포구의회 지역신문 광고금액으로서 1억404만원이며 전년대비 4,282만8천원, 69.96%이 증액되었음.

이는, 디지털영상게시판,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물품구매비 증가로 인한 것임.

- “행정운영경비”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됨.

-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,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액은 20억8,771만6천원이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(2.8%) 등이 반영되어 653만1천원, 0.3% 증액되었음.

-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5,040만원이며 전년대비 5,400만원, 51.72% 감액되었음. 이는 국내 여비 집행 현실화 반영에 따라 50% 감편성되었기 때문임.

5. 검토의견

-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필요 경비 편성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지방의회의 역사와 업적을 표현할 기념동판 제작, 의회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, 홍보영상 표출을 위한 영상게시판 및 키오스크(kiosk)¹⁾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.
-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몇 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낮거나 같게 총액한도제 범위에서 편성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첫째,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업무량 조정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내실화하여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,
- 둘째, 의회 홍보의 패러다임은 정량적 요소보다는 정성적 가치를 염두에 둔 ‘어린이 모의의회’ 등과 같은 사업으로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이라는 정책 목표를 의회홍보선진화 정책으로 마련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은 최신 개인 모바일 기기의 활용성 및 수요 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해야겠음.
- 셋째, 수차례 의회비 예산편성 기준 개정에도 여전히 정부에서 상세한 편성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여 ‘예산 편성의 자율성 강화’를 요구하는 지

1)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된 터치스크린 정보전달 시스템을 이용한 마케팅

방의회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회비 항목이 편성되어야 하며,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아울러, 급변하는 정치·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공 및 민간 교육을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2. 예산의 심의·확정

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36조(예산의 편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·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